

의안번호	2108730
의 퇴 인	유정주의원
회 답 일	2021.03.18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□ 손실보상(안 제5조)

-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 실시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용역 계약의 파기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

□ 예술인등 지원(안 제6조)

-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 실시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지원, 생활안정 지원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

□ 손실보상지원위원회(안 제7조)

-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한 예술인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·지원위원회(이하 “손실보상지원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도록 하고, 손실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

□ 실태조사(안 제8조)

- 손실보상지원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용역 계약의 파기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Ⅲ. 미첨부 사유

- 제정안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 실시로 문화예술 관련 용역 계약의 파기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지원, 생활안정 지원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 발생 가능성

[표 1]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재정수반요인	추계 여부	비고
손실보상(안 제5조)	×	·규모 등 추정곤란
예술인등 지원(안 제6조)	×	·규모 등 추정곤란
손실보상지원위원회(안 제7조)	○	-
실태조사(안 제8조)	×	·규모 등 추정곤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그러나 안 제5조, 제6조, 제8조의 경우 현 시점에서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의 대상 및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, 손실보상·피해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손실보상 지원위원회가 결정하게 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- 안 제5조의 손실 보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의 수 및 손실 규모, 손실보상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

$$- \text{추가재정소요액} = \sum_{t=2022}^{2026} [\text{손실보상 대상자}_t \times \text{보상금액}_t]$$

- 개정안에 따른 예술인등의 경제적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, 손실 보상의 대상자 선정 및 손실보상의 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보상지원위원회가 결정하게 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- 안 제6조의 예술인등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의 수 및 손실 규모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

$$- \text{추가재정소요액} = \sum_{t=2022}^{2026} [\text{지원 대상자}_t \times \text{지원금액}_t]$$

- 개정안에 따른 예술인등의 경제적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,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의 규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보상지원위원회가 결정하게 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- 안 제8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

$$- \text{추가재정소요액} = \sum_{t=2022}^{2026} [\text{실태조사 사업}_t \times \text{실태조사 사업비용}_t]$$

-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정부는 영업 중단·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새희망자금으로 250.7만명에게 2.76조원을 집행하였고, 2021년 2월 5일 기준 버팀목자금으로 270.8만명에게 3.773조원을 지원함
-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상세 내역은 [참고자료]를 참조

- 안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지원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간 2,000만원으로 예상됨

$$○ \text{추가재정소요액} = \sum_{t=2022}^{2026} [\text{민간위원 수}_t \times \text{회의참석 수당}_t \times \text{회의개최 횟수}_t]$$

-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민간위원의 수를 10명으로 가정하고, 회의 참석수당은 20만원¹⁾, 연간 위원회 개최 횟수는 10회가 개최된다고 가정함(10인×20만원×10회=2,000만원)

1)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

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(서면심사 100,000원)을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, 식비,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(220목) 또는 일반수용비(210-01목)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[참고자료] 소상공인 재난지원금

1. 새희망자금(2020.9.)²⁾

□ 목적: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직접 지원

□ 지원 대상 및 규모

① (일반업종) '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, 100만원 지급

○ ('19. 이전 창업) '20년 상반기* 월평균 매출액이 '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- '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

○ ('20. 창업)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6~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 8월 매출액*이 6·7월 월평균 대비 감소

* 국세청이 보유한 6, 7, 8월 3개월간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 활용

※ 도박업종, 변호사·회계사·병원 등 전문직종,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② (특별피해업종)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

①, 영업제한②(운영시간 제한, 배달·포장만 허용)된 소상공인에 각각 200만원, 150만원 지급

○ '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및 '20년 매출 감소 요건 미적용

집합금지 업종	• (전국) 헌팅포차, 감성주점, 뷔페,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, 300인 이상 대형학원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, 실내집단운동, 실내 스탠딩공연장, PC방, 유흥주점, 콜라텍 • (수도권) 10인 이상 학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실내체육시설
영업제한 업종	• (수도권)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(21~05시 포장·배달만 가능),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·제과제빵·아이스크림/빙수 전문점(포장·배달만 가능)

□ 재정 소요 및 대상자 수

○ 재정소요(운영비 제외) : 3.28조원(일반 2.43, 영업제한 0.49, 집합금지 0.36)

○ 대상 수 : 293.9만명(일반 243.4 영업제한 32.3, 집합금지 18.2)

2) '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' 보도자료(2020.9.23, 중소벤처기업부)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참조

□ 새희망자금 지급실적(2021.2.26.기준)³⁾

구분	계	집합금지업종	영업제한업종	일반업종
지원인원	251.1만명	12.4만명	25.7만명	212.9만명
지원금액	2.76조원	0.25조원	0.39조원	2.13조원

2. 버팀목자금(2021.1.)⁴⁾

□ 목적: 영업 중단·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❶영업피해 지원, ❷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

□ 지원 대상 및 규모: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·제한업종 및 '19년 대비 '20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

※ '20.4차 추정시 지원한 개인택시(16만명), 유흥업소(3만개)도 지원대상 포함

<버팀목자금 지원 요건>

구분	소상공인 여부	매출액 규모	매출액 감소	지원금액
집합금지업종	○	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예) 유흥주점 10억원 이하	무관	300만원
영업제한업종	○	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	무관	200만원
일반업종	○	'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	○	100만원

<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기준)>

구분	사회적거리두기 2단계	사회적거리두기 2.5단계	연말연시특별방역
집합 금지	유흥업소 5종 (유흥주점·단란주점·감성주점· 헌팅포차·콜라텍), 홀덤펍	유흥업소 5종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체육시설, 학원·교습소, 홀덤펍	실외겨울스포츠시설 (스키장·빙상장·눈썰매장) 및 부대업체 (시설내 음식점, 편의점, 스포츠용품점 등 +인근 스키대여점), 파티룸 [수도권] 밀폐형아이스크린골프장
집합 제한	식당·카페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직접판매홍보관, 학원, 교습소	식당·카페, 이미용업, PC방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오락실·멀티방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목욕장업, 영화관, 종합소매업(300㎡이상) 등	숙박시설

3)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자료

4) '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' 보도자료(2021.1.6, 중소벤처기업부), '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'(2020.12.29, 관계부처 합동) 등 참조

□ 버팀목자금 지원계획(2020.12.29.)

- ❶영업피해 지원(공통 1백만원) + ❷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(집합금지 2백만원, 집합제한 1백만원)으로 구분·지원

	계	집합금지업종	집합제한업종	일반업종
수혜 소상공인 수	280만명	23.8만명	81만명	175.2만명
지원금액	1.0~3.0백만원	3.0백만원	2.0백만원	1.0백만원
❶영업피해 지원		(1.0백만원)	(1.0백만원)	(1.0백만원)
❷임차료 등 경감 지원		(2.0백만원)	(1.0백만원)	(-)
재정소요	4.1조원	0.7조원	1.6조원	1.8조원

□ 버팀목자금 지원실적(2021.2.26.기준)⁵⁾

구분	계	집합금지업종	영업제한업종	일반업종
지원인원	282.0만명	14.3만명	86.7만명	181.1만명
지원금액	3.92조원	0.42조원	1.69조원	1.81조원

5)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자료

국회예산정책처	사회비용추계과
과장	이진우
추계세제분석관	임병화
연락처	02-6788-3739
	limbh@na.go.kr
